

	<h1>기획산학처 규정</h1>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2007. 2. 2.
		최종개정일자	
		담당부서	기획산학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 기획산학처(이하 "기획산학처"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무) 기획산학처장은 총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.

1.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기획업무
2. 학사운영 및 연구에 관한 기획업무
3. 규정의 제정, 개·폐 및 규정집 발간 업무
4. 조직, 인사 및 각종 제도 개선에 관한 업무
5. 사무분장과 업무 조정에 관한 업무
6. 기획산학처 운영에 필요한 특별위원회의 설치, 운영 업무
7. 기타 총장이 지정하는 업무

제3조(조직) ① 기획산학처에 처장과 직원을 둔다.

② 기획산학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4조(기획조정위원회) ① 기획산학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기획산학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위원회는 제2조(직무)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관계 세칙) 기획산학처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기획산학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을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07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의 기획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간주한다.